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

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4. 22. 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9년 4월 9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2019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증원분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기능 강화 및 학교신설 등 교육 행정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

4. 주요내용

○ 지방공무원 총수: 3,235명 → 3,305명 (△70명)

○ 일반직: 2,944명 → 2,995명 (△51명)

(3급: ▽1명, 4급: △3명, 5급이하: △49명)

○ 교육전문직원: 271명 → 290명 (△19명)

(일반직 4급 상당: △2, 일반직 5급 상당: △17명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

○ 일반직공무원 51명과 교육전문직 공무원 19명 등 총 70명을 증원하여,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3,305명이 됨

○ 정원을 증원하여 2019년 3월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하고, 학교신설, 행정직 단독 배치교 해소 등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○ 다만, 일반직 3급 정원의 감원에 대해서는, 향후 정원운용 및 기관운용 여건상 증원이 필요로 할 때에는,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, 이번 조정 이후 정원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□ **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** [대통령령 제28679호]
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7.5.8, 2018.2.27]